



제438회국회(임시회)
제 2 차 국 방 위 원 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민간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한 보수지급 의무>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21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공 춘 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검토의견	2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선희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6. 6. 13.
3. 회부연월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보건의료인의 확보와 관련하여 그 보수 수준을 민간 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군보건의료인의 보수 및 처우는 민간의료기관에 비하여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임.

그러나 최근 군의료 인력 지원이 급감함에 따라 군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군 장병의 건강권 보장과 군 전투력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가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군 의료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군인들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민간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한 보수지급 의무

현행법은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를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10조제3항).

개정안은 국가가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보건의료인에게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군보건의료인의 확보) ① · ② (생략)	제10조(군보건의료인의 확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군보건의료인의 보수는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u>국가는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보건의료인에게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군보건의료인은 군인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진료, 군 응급의료체계의 운영 및 장병의 건강관리 등을 담당하는 인력임.

군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확보는 군인 등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한편, 비전투 손실을 방지하고 군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 할 수 있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도 군보건의료자원의 개발·확보와 우수한 군보건의료인의 양성을 주요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군의관 신규 임관 인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군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국방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임관한 군의관은 304명으로 2025년 임관 인원 692명에 비하여 약 56% 감소하였음. 반면, 2023년에 임관한 군의관 745명 중 2026년 전역한 군의관은 7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에 2026년부터 신규 임관 인원과 전역 인원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의관의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이러한 군의관을 중심으로 한 군 의료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군보건의료인에게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

군보건의료인의 보수와 처우가 민간의료기관에 비하여 경쟁력이 부족할 경우, 군의관 등으로의 지원뿐만 아니라 의무복무기간 이후의 복무연장이나 장기복무 유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현재 단기군 의관의 연간 보수는 전문의 대위 기준 약 4천만원이고, 장기군 의관은 전문의 소령 기준 군 의관 장려수당을 포함하여 약 8천만원 수준임.

장기군 의관은 진료실적에 따른 진료업무보조비 등이 추가로 지급받고 있으나,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어서 장기군 의관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군보건의료인에 대한 적정 보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 제고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보수 격차를 완화하여 군 의료인력의 지원 및 장기복무 유인을 높임으로써 군보건의료인 확보와 군인들의 건강권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도 이미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를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법률 개정이 현행 규정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어떠한 추가적인 의무나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국가가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지급의무를 명시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한편으로 현행법의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여’라는 표현을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로 변경하고 있음.

‘준하여’는 민간의료기관의 보수와 유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고려하여’는 민간 보수 수준을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로 취급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이 현행법보다 보수기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둘째, 개정안에서 규정한 ‘적정 수준의 보수’의 의미와 비교기준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민간의료기관의 의사 보수는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 임상경력, 근무지역, 당직·응급진료 여부 및 의료기관의 유형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어떠한 민간의료기관과 직종을 비교기준으로 삼을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을 통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명확히 구현될지가 불확실해질 수 있음.

- 셋째, 최근 군의관 지원 감소에는 민간의료기관과의 보수 격차뿐만 아니라 현역병 1년 6개월 대비 긴 의무복무기간 3년, 근무지역과 당직 부담 및 전역 후 진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관계 부처 및 단체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규정에서도 군보건의료인 보수를 민간 보수 수준에 준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료업무보조비 지급 등을 통해 군의관 처우를 일정 부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의 실효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대한의사협회는 군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적정수준의 보수 지급 책임을 명시하도록 한 동 개정안은 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찬성한다는 입장임.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를 인상함으로써 군보건의료인을 원활히 확보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현행법 규정과의 실질적인 차이 여부, 긴 복무기간으로 인한 지원감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04

※ 참고자료

1. 공중보건 의사 및 의무장교 신규 편입추이 및 복무현황 등

○ 공중보건 의사 및 의무장교 신규 편입추이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공중보건 의사	1,211명	1,318명	1,035명	1,050명	1,114명	716명	743명
의무장교	706명	758명	822명	695명	754명	824명	692명

○ 공중보건 의사 및 의무장교 복무 현황(연말 기준)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공중보건 의사	3,539명	3,489명	3,524명	3,365명	3,172명	2,852명	2,548명
의무장교	2,449명	2,471명	2,446명	2,438명	2,426명	2,426명	2,430명

○ 유사 역종별 복무기간

구 분	복무기간 (교육기간)	구 분	복무기간 (교육기간)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자격 : 의사) 공익법무관(자격: 변호사) 공중방역수 의사(자격: 수 의사)	3년 (3주)	군 의 관 (자격: 의사) 수 의 장 교(자격: 수 의사)	3년 (6주)
		법 무 장 교(자격: 변호사)	(9주)
		학 사 장 교	3년 (16주)
전문 연구 요 원	3년 (3주)	육 군 ROTC	2년 4개월 (12주)

2. 장기군 의 관 본 급여 외 지급되는 보수

• 진료업무보조비

- 지급대상 : 전문의 자격의 3년 초과 복무 군 의 관(장기복무 군 의 관)
- 지급기준 : 직위별 한도 범위 내에서 진료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
 - * 일반진료업무보조비 : 진료실적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 지급
 - * 응급진료업무보조비 : 응급진료 1건당 10만원, 월 최대 150만원 지급
- 근거규정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

• **군의관 장려수당**

- 지급대상 : 3년 초과 복무 군의관(장기복무 군의관)
- 지급기준 : 복무기간에 따라 매월 지급

구 분	복무기간			
	3~4년	5~9년	10~14년	15년~
장려수당(만원)	55	66	77	88

- 근거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